

## 「20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모두의 챌린지 바이오 창업기업 모집공고

제약바이오 분야 혁신적인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국내 제약사와의 개방형 협업(Open Innovation)을 기반으로 기술검증(PoC) 및 공동연구를 촉진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20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모두의 챌린지 바이오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6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사전 실명등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접수 전 필히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 ① 실명등록 대상 :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
- ② 실명등록 경로 : [www.siren24.com](http://www.siren24.com) (☎1577-1006)
- \* 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 K-Startup 누리집 - 고객센터 - 온라인매뉴얼 - 일반매뉴얼 - K-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
- ※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기업) 통보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협약체결 약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공공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시, 제출서류 중 일부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자동 연동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4. 접수 방법 - 제출 서류 참고

### 1 모집 개요

- **사업목적** : 국내 제약사와 바이오 분야 창업기업 간 개방형 협업(Open Innovation)을 기반으로 기술검증(PoC) 및 공동연구를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 바이오 창업기업 성장 지원
- **(제약사 협업)** 바이오 분야 창업기업의 주요 성장 장벽을 해소하고, 기술·연구 인프라를 활용한 기술 자문, 실증 및 공동연구 기회를 제공하여 협력 기반의 성장 촉진

- **모집대상** : 공고일 기준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창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동 공고문의 신청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 [붙임 5] 신산업 창업 분야에 해당하는 바이오 분야 창업기업은 업력 10년까지 신청 가능

- **선정규모** : 창업기업 30개사 내외

※ 최종 선정 규모는 신청률 등 지원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모집기간** : 2026.6.11.(목) ~ 7.1.(수) 16:00까지

- **지원내용** : 창업기업에 사업화 자금 및 후속 연계 지원

- **(사업화 자금)** 국내 제약사와 협업을 통한 기술검증(PoC) 및 개발 등에 소요되는 협업 지원금 지원(최대 1억원)
- 사업화 자금 일부는 주관기관 제공 단계별 바이오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사업화 메뉴판) 활용을 위해 선정 이후 협의(집행) 예정
- \* 바이오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상세 내용은 [붙임 6] 참조

< 주관기관(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바이오분야 사업화 메뉴판(예) >

TRL1 (개념검증)	TRL2 (후보물질 탐색)	TRL3 (후보물질 확보)	TRL4 (비임상 안정성확보)	TRL5 (IND)	TRL6 (임상1상 완료)	TRL7 (임상2상 완료)	TRL8 (임상3상 완료)
----------------	----------------------	----------------------	------------------------	---------------	----------------------	----------------------	----------------------

→ → → → → → →

단계별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허분석</li> <li>▶ R&amp;D전략 Master Plan컨설팅</li> <li>▶ BM 컨설팅 보험급여 약가 컨설팅</li> <li>▶ 약리기전/효력시험 기초 연구자료 컨설팅</li> <li>▶ 독성분석 사전 컨설팅</li> <li>▶ 당/단백질 특성 분석 서비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MC 사전 컨설팅</li> <li>▶ 비임상 사전 컨설팅</li> <li>▶ 인허가 사전 컨설팅</li> <li>▶ 글로벌 파트너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상 사전 컨설팅</li> <li>▶ 글로벌 파트너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파트너링</li> <li>▶ BD 컨설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D 컨설팅</li> </ul>
-------------	---	--	---	--	--

- (글로벌 연계) 글로벌 투자사 또는 제약사 등 대상 IR 피칭 프로그램 참여 및 네트워킹 등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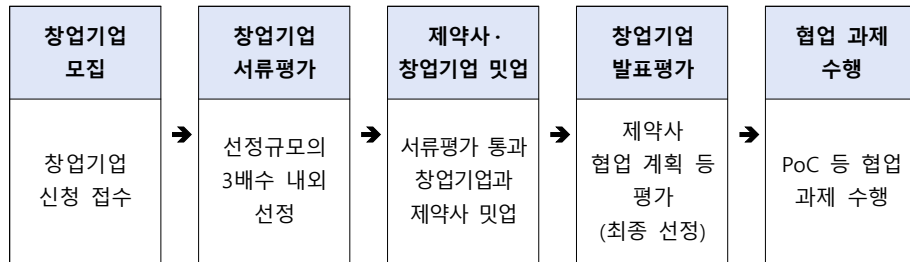
\* 프로그램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후속지원 연계) 협업 우수과제 대상 '27년 중기부·복지부 시행 연구개발사업(R&D) 및 사업화 지원 연계\* 예정

\* ①바이오 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최대 2년, 10억원), ②K-바이오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최대 1년, 4억원) 연계 고려, 사업종료 후 별도 안내 예정

□ **사업기간** : 협약 시작일로부터 8개월 이내 ('26.8. ~ '27.3.)

□ **추진절차**



※ 세부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제약사 협업 및 성장 지원** : 제약바이오 분야 특화 액셀러레이팅 및 국내·외 제약사 협업 네트워크 지원 등 가능 기관 협력 지원

- (주관기관)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 바이오 분야 전문 액셀러레이팅 기관으로 참여기업의 기술검증(PoC), 사업화 및 투자 연계 지원
- (협력기관)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 : 국내·외 제약·바이오 기업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참여 제약사 - 바이오벤처 간 개방형 협업(Open Innovation) 및 파트너링을 지원, 글로벌 사업개발(BD), 투자유치(IR) 교육·멘토링과 해외 바이오 파트너링 행사 연계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 제공

2

협업 과제 개요

□ **수요 기술 현황** : 참여 제약사(19개사)가 전략적 협업을 희망하는 세부 기술 및 과제를 제시

※ 신청기업은 참여 제약사의 수요기술 과제 중 1개 과제에 한하여 신청 (중복 불가)

연번	기업명	수요기술	비고
1	동아ST	■ 저분자 화합물 항암제 혹은 면역질환 치료제 후보물질	- 단계 : Discovery to Phase 1
2		■ 신규 Small molecule 혹은 TPD 발굴 platform - AI, Biophysics 등의 platform 보유 회사	
3	Daewon 대원제약	■ 펩타이드, 항체 등 바이오의약품의 비침습적 체내 약물전달 기술 또는 플랫폼	- 경피 약물전달 제외
4	휴온스	■ 차세대 신규 모달리티 기반 혁신 항암 신약 - 저분자, 항체, ADC, TPD, 유전자치료제, 세포치료제 등	- 단계 : 전임상 PoC, IND 준비
5		■ 면역증, 대사질환, CNS, 희귀질환 분야의 혁신 신약 물질	- 단계 : 전임상 PoC, IND 준비
6	유한양행	■ MGD(분자접착제) 및 차세대 TPD 신약 물질 발굴을 위한 High-throughput 단백질 분석 자동화 플랫폼 기술	- 항암·면역증 분야 유�효물질 발굴
7		■ 난치성 면역증 표적을 효과적으로 분해·격리할 수 있는 신규 Effector 단백질 리간드 및 근접유도(TPD/TPC) 약물 발굴 플랫폼 기술	- 면역증 질환 - 단계 : 선도물질 발굴 ~ 전임상 PoC
8		■ 차세대 ADC 신약 개발을 위한 독자적 링커-페이로드 및 항체 개발(생산) 기술	
9	SAMJIN 삼진제약	■ 저분자 또는 항체 신약 개발 가속화를 위한 AI 기반 약물 발굴 플랫폼 기술	
10		■ 차세대 혁신 신약 도출을 위한 TPD (PROTAC, 분자접착제) 개발 플랫폼 기술	
11	마더스제약	■ 항암제 타겟에 대한 항체 및 항체 관련 모달리티 신약 파이프라인	- 선도물질 수준
12		■ 항체 최적화 플랫폼 기술	- 후보 도출을 위한 선도물질 최적화
13	현대약품(주)	■ 현대약품 보유 페이로드(Payload) 활용 ADC 공동개발을 위한 플랫폼 기술	
14	ILDONG	■ 차세대 항암 혁신신약 후보물질 발굴	- 저분자화합물, 항체, ADC, TPD 등
15	일동제약	■ 자가면역, CNS(중추신경계), 희귀질환 분야의 혁신신약 후보물질	- Discovery~Candidate

연번	기업명	수요기술	비고
16	GC녹십자	■ 항암 분야 비임상 단계의 차세대 항체 유래 신약 후보물질	- Long-acting 기술 우대
17		■ 면역·염증 분야 비임상 단계의 차세대 항체 유래 신약 후보물질	
18	Hanmi 한미약품	■ 중앙, 면역·염증질환 치료제	
19		■ AI 기반 Digital Healthcare	
20	신신제약	■ 통증·염증·피부 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TDDS (Transdermal Drug Delivery System) 플랫폼 기술	- 마이크로니들 포함
21	제일약품	■ 고휘암 치료를 위한 차세대 혁신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공동 개발	- 저분자 화합물 또는 경구 단백질 분해제
22		■ 내분비 및 대사 질환 치료를 위한 차세대 혁신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공동 개발	- 단계 : 선도~후보물질
23	inno.N	■ 대사 질환 및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차세대 혁신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공동 개발	- 저분자화합물, 펩타이드, 항체 등
24		■ CNS(중추신경계) 질환 치료를 위한 차세대 혁신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공동 개발	- 단계 : 후보물질 ~임상1상
25	Dongkook 동국제약	■ Aesthetic 분야 생체적합성 기반 차세대 디마필러용 신규 바이오소재 및 전달 플랫폼 - ECM 기반 바이오소재, 비입자형 생분해성 고분자, 재조합콜라겐 등	- 단계 : 후보물질 ~전임상 POC
26	GUJU 구주제약	■ 내용고형제 약물전달 시스템 플랫폼 기술	
27		■ 염변경 및 차별화된 제형 설계를 통한 제네릭 및 개량신약 공동 개발	
28	BORYUNG	■ 항암 나노입자의 생체거동 평가 및 예측 플랫폼	- 임상 1상 데이터 분석을 통한 임상 성공률 제고
29	(주)동구바이오제약	■ 빠른 시장 진입 가능한 후기 단계(Late-stage) 의약품	- 항암, CNS, 희귀질환 제외
30		■ 항노화, 피부 건강, 웰니스 관련 기능성 소재 및 건강기능식품	
31		■ 피부 개선 · 재생(Rejuvenation) ·안티에이징 관련 메디컬 디바이스	
32	중근당	■ 항암 분야 차세대 TCE 및 다중항체 신약 후보물질 및 플랫폼 기술	- 단계 : 비임상, GLP Tox 전후
33		■ 면역염증 질환 및 대사질환(신장·근육·심장) 분야 TCE 및 다중항체	
34	SK 케미칼	■ JAK 대체 또는 신규 자가면역 타깃 기반 면역·염증 질환 저분자 신약 후보물질	- 경구용 저분자화합물 - 단계 : 전임상 ~ 임상
35		■ 면역조절 signaling pathway 기반 탈모 치료용 저분자 신약 후보물질	
36		■ multi-incretin 조절 기반 비만·대사질환 치료용 경구 저분자 신약 후보물질	

### 3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모집공고일 기준 바이오 분야 해당 창업 10년 이내인 창업기업

#### ▶ 창업 후 10년 이내 기업(신청가능 창업(설립)일 기준 : '16.6.12.~'26.6.11.)

- (개인)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공동(각자)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 자격 적합 여부 결정  
**([붙임 2] 창업기업 기준표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필히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6.1.1.)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 서식 내 창업 기준 충족일이 모집공고일 당일 포함

#### □ 신청 제외 대상

※ 법인인 기업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 모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④ 조건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면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② 조건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③ 조건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환수금 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
2. 환수금 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은 자
3. 환수금 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 납부 중인 자(분할 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 하여 1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붙임 3]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⑤ 다음의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1. '20~'21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1단, 2단 및 '22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선정기업
2. '23~'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선정기업(또는 협약체결 예정 기업)
3. '25~'26년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선정기업
4. '26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선정기업(또는 협약체결 예정 기업)
5. '26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개방형 혁신) 선정기업(또는 협약체결 예정 기업)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⑦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⑧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⑨ 2026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⑩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⑪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⑫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4

접수 방법

□ **접수 기간** : 2026. 6.11.(목) ~ 7.1.(수) 16:00까지

< 유의 사항 >

- ①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
- ② 7년 이내 창업기업은 '창업기업 확인서' 제출이 필수이며,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됨
  - \* 공고 마감일까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https://cert.k-startup.go.kr/>)을 통해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에 시일(최대 10일, 주말·공휴일 제외)이 소요되므로 미리 발급 신청할 것을 권장
- ③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 신청·접수는 **16:00 정각에 종료** (신규 신청 불가). 다만, 16:00 전에 1단계(약관동의) 후 신청서 작성 단계에 진입하여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18:00까지 작성 항목 수정, 사업 계획서 및 증빙서류 추가 업로드 등 가능
- ④ 온라인 신청서 작성 이후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됨
- ⑤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18:00 이후)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은 수정 및 삭제 불가

□ **접수 방법**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www.k-startup.go.kr](http://www.k-startup.go.kr))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 실명인증 및 ② 기업 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 기업인증 : (개인사업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기업용),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4종 중 택1 / (법인사업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기업용) 2종 중 택1

\*\*\* 온라인 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 사업 신청 매뉴얼' 참고

○ 협업을 희망하는 과제 1개만 선택하여 제출 가능

□ 제출 서류

제출 서류	제출 방법	비고
①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
② 사업계획서[붙임 1]	파일 첨부	용량제한 30MB
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 법인등기부등본)		
④ 신분 확인 서류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서류(행정정보) 자동 제출	공공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서류(파일) 별도 첨부
⑤ 사업자등록증명		
⑥ 창업기업 확인서	공공데이터 자동 연동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은 자에 한함

※ 사업계획서는 공고문 내 [붙임 1]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외 양식으로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평가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 및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공마이데이터 연동 서류(총 29종) >

구분	신청 행정정보(서류) 현황				
본인 (개인)* (20종)	①주민등록증	②지방세납세증명서	③국세납세증명서	④납세사실증명	
	⑤사업자등록증명	⑥폐업사실증명	⑦휴업사실증명	⑧부가세과세표준증명	
	⑨표준재무제표증명	⑩부가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⑪4대보험완납증명	⑫국민연금사업장 가입증명	
	⑬메인비즈확인서	⑭벤처기업확인서	⑮이노비즈확인서	⑯중소기업확인서	
	⑰디자인등록원부	⑱상표등록원부	⑲실용신안등록원부	⑳특허등록원부	
	기업 (법인)** (9종)	①지방세납세증명서	②국세납세증명서	③사업자등록증명	④폐업사실증명
		⑤휴업사실증명	⑥4대보험완납증명	⑦벤처기업확인서	⑧창업기업확인서
⑨표준재무제표증명		* 개인사업자 / ** 법인사업자			

※ 대내·외 사정으로 서류(행정정보) 수집 과정에서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해당 오류로 인해 사업 신청 및 평가에 불이익은 없음  
(필요시 평가 및 선정평가 등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5 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 절차 : 총 2단계 평가(서류 →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선정평가 운영 및 평가 일정, 평가 결과 등은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



※ 신청기업의 요건 및 사업계획서 유사중복성 검토는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 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협약 취소 처리

· [전문기관]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협력기관)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

□ 평가 방법

- **요건검토** :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 자격 및 신청 제외 대상 여부 검토
  - \* 신청자격 미해당 및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서류평가** : 신청기업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를 시행하여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최종 선정 규모의 3배수 내외)**
  - \* 신청·접수 규모가 선정 규모의 3배수 이내일 경우 서류평가를 생략할 수 있음
- (가점) 비수도권 소재 신청기업에 가점 **2점 부여**
  - \* 사업자등록증명의 본점 소재지가 비수도권에 해당하는 경우 부여
- **발표평가** : 과제 이해도, 신청 기업의 전문성 및 보유 역량, 협업 과제의 실현 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자(사업 신청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기술·서비스에 대한 심층 평가

\* 평가시간 : 20분 이내(발표 10~15분 + 질의응답)

\*\* 평가방법 : 대면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변경 가능

○ **최종 선정** :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지원 대상자 선정

**< 최종선정 대상자의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

- ※ 최종 선정 통보를 받은 선정기업은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요청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3일 이내(마지막 날 17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모두의 챌린지 바이오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개별 발송 예정이며, 위 발송일 기준
- ※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신청한 사업 중 [붙임 4]에 명시된 사업의 선정 절차(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
- ※ 단, [붙임 4]에 명시된 사업에 이미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수행) 가능
- ※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최종 선정기업은 최종선정 통보일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3일차 17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

\* 기간 내 미제출 시, 선정이 취소되며 차순위자(후보자)에게 사업 참여 기회 부여

- 선정 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 기업을 선정하고, 정부지원사업비\*를 배정하여 최종 확정 공고

\* 선정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정부지원사업비 차등 배정 예정

- 평가 과정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창업기업은 주관기관 또는 전문기관에서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 신청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 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 규모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평가지표**

○ 협업 과제에 대한 제약사 수요 적합성, 보유기술 경쟁력 및 협업 역량, 협업 구체성 등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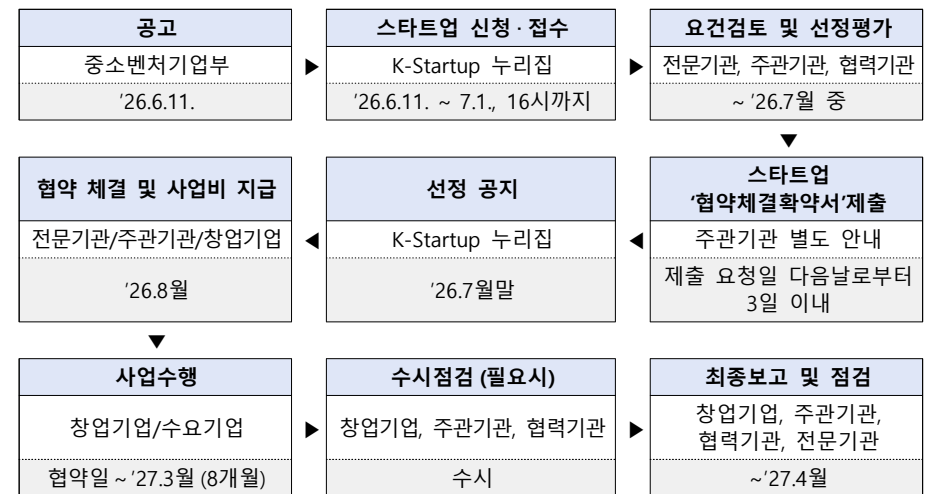
\* 선정 규모와 관계없이 취득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평가 항목	세부 내용
제약사 수요 적합성	• 참여 제약사가 제시한 기술수요 및 협업과제의 수행 부합도 (이해도), 협업과제 지원 전략적 필요성 등
보유기술 경쟁력 및 협업 역량	• 보유 기술의 혁신성·차별성, 연구개발 역량 및 관련 연구·사업 수행 경험
실현 가능성 및 구체성	• 협업 과제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 기술검증(PoC) 목표 달성 가능성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사업화 및 성장 가능성	• 협업 성과의 사업화 가능성, 제약사 협업 지속 가능성, 글로벌 진출 및 후속 성장 전략
가점(2점)	• 사업자등록증명의 본점 소재지가 비수도권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 부여

\* 제약사별 제안 과제담당자가 평가위원으로 참석 예정

**□ 사업 운영 일정**

※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①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 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신청 과정에서 **제3자(컨설턴트 등)가 선정을 담보로 특정 사례를 요구하거나 접근해 온 경우, 아래 방법에 따라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창업진흥원 누리집([www.kised.or.kr](http://www.kised.or.kr)) > 고객광장 > 제3자 부당개입 신고

④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 신청 시 유의 사항

- 동 사업의 신청은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와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상의 신청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자는 K-Startup 누리집에 등록된 정보(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를 현행화하여야 하며, 기재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 바람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 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참여 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5년)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 함

-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써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 선정 완료 후 공동-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 신청자(대표자) 또는 신청기업 내 임직원은 '26년 동 사업의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으로 참여 불가

- 신청 마감 후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 평가 중 유의 사항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

- 평가는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직접 참여해야 하며, 대표자 본인의 불참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 다음 날로부터 6일 이내 (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 기관에 신청 가능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대표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수요기업별 적정 협업 기업이 없을 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 선정 후 유의 사항

-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신청한 사업 중 [붙임 4]에 명시된 사업의 선정 절차(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 처리됨
  - 단, [붙임 4]에 명시된 사업에 이미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 협약 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 체결(수행)이 가능
-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 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전문·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비가 관리·운영됨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 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별도 심의를 통해 선정·협약 취소 등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 등의 사유로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 선정취소 또는 협약 해약,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전문기관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이 가능하여야 함
  - \* 지정 은행의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계좌 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 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 수요기업이 출제한 과제에 대한 창업기업의 해결 방안의 소유권은 창업기업에게 귀속됨
- 사업 참여 중 습득한 수요기업의 경영상 비밀 등 정보 일체는 수요기업의 서면을 통한 허락 없이는 외부 유출을 금지하며, 유출에 따른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음(상호 간 '비밀유지협약(NDA)' 필수 체결 예정)
-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고,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의 의무 및 책임**

- 선정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7** **문의처**

□ **사업 문의**

구분	기관명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주관기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충북 청주시	043-710-5932
협력기관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	서울 서초구	02-6247-0918

□ **시스템 문의**

- 온라인 신청(시스템)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붙임 1** **사업계획서**

**「20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모두의 챌린지 바이오 창업기업 사업계획서**

※ (표는 삭제 후 제출) 공고문 내 2. 협업 과제 개요를 참고하여 협업하고자 하는 수요기업(제약사)명 및 수요기술명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사업계획서 제출 이후 수정은 불가하며 수요기업(제약사)명 또는 수요기술명이 상이할 경우 평가 및 선정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신청과제	수요기업명	공고문(2. 협업 과제 개요)을 참고하여 수요기업명 기재
	수요기술명	공고문(2. 협업 과제 개요)을 참고하여 수요기술명 기재

□ **일반 현황**

과제명	(수요기술 해결을 위해 제안하는 자사의 핵심 파이프라인 및 프로젝트명 기재)				
기업명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상 '명칭'과 동일하게 기입)	대표자명	000		
대표자 생년월일	0000.00.00.	대표자 유형	단독/공동/각자대표		
연락처	000-0000-0000	이메일			
개업연월일	0000년 00월 00일	사업장 소재지	00도, 00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인력 구성(신청자 본인 제외 공동·각자대표 포함)					
연번	성명	직위	담당업무	보유 역량(경력 및 학력 등)	구성 상태
1	000	공동대표	R&D 총괄	생명공학과 교수 재직(0년)	완료
2	000	선임	임상/인허가	00학 전공, 000재직(0년)	예정(00.0)
3					
:					

※ (표는 삭제 후 제출) 본문 5page 내외, 11포인트로 작성 권장(증빙서류 등은 제한 없음), '파란색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검정색 글씨로 작성하여 제출, 양식의 목차, 표는 변경 또는 삭제 불가 (행 추가는 가능,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공란으로 유지)하며, 필요시 사진(이미지) 또는 표 추가 가능

□ 수요과제 부합성 및 기술검증(PoC) 계획

제안 기술 소개	<p>※ (표는 삭제 후 제출) 제안하는 후보물질, 플랫폼 기술, 서비스 등의 전반적인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이오/신약의 경우 적용증, 타겟 분자, 모달리티(저분자, 항체, 세포치료제 등), 작용기전(MoA) 등을 명확히 기재</li> </ul>
과제 해결방안	<p>※ (표는 삭제 후 제출) 타겟 수요기업(제약사)이 제시한 수요기술(문제)에 자사의 기술이 어떻게 부합하며, 어떤 방식으로 한계점을 극복(해결)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p>

기술 경쟁력 및 확보 데이터	<p>※ (표는 삭제 후 제출) 기존 치료제(SoC) 및 경쟁 기술 대비 자사 기술의 우위(효능, 안전성, 편의성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까지 확보한 주요 In-vitro / In-vivo 실험 데이터 요약 제시 (그래프 삽입 권장)</li> </ul>
기술검증(PoC) 등 협업 세부 계획	<p>※ (표는 삭제 후 제출) 협약기간 내 수요 제약사와 공동으로 진행할 구체적인 실증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 000 효력평가 모델 확립, 독성시험 진행, 공동 특허 출원 등 제약사와의 구체적인 협업 포인트 명시</li> </ul>

<p>현재 개발 단계(TRL) 및 최종 산출물</p>	<p>※ (표는 삭제 후 제출) 현재 제안 기술의 TRL(기술성숙도) 단계 및 협약기간 종료 시점의 예상 달성 목표물(비임상 진입, IND 승인, 라이선스 아웃 검토 등) 기재</p>												
<p>협약기간 내 추진 계획</p>	<p>※ (표는 삭제 후 제출) 협약기간 내 기술검증(PoC) 마일스톤 달성을 위한 월별 추진 일정</p> <table border="1" data-bbox="288 965 987 1299"> <thead> <tr> <th>추진 내용</th> <th>추진 기간</th> <th>세부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수요 제약사와 산출물 단계 협의</td> <td>26.7.00.~26.8.00.</td> <td>평가 프로토콜 및 데이터 공유 기준 확립</td> </tr> <tr> <td>In-vitro 효력시험 및 PK/PD 분석 등</td> <td>26.8.00.~26.12.00.</td> <td>기술검증(PoC) 수행 및 데이터 확보</td> </tr> <tr> <td>실증 데이터 기반 후속 협력 논의</td> <td>27.1.00.~27.2.00.</td> <td>L/O 검토, 공동연구 확대 및 후속 파트너링</td> </tr> </tbody> </table>	추진 내용	추진 기간	세부내용	수요 제약사와 산출물 단계 협의	26.7.00.~26.8.00.	평가 프로토콜 및 데이터 공유 기준 확립	In-vitro 효력시험 및 PK/PD 분석 등	26.8.00.~26.12.00.	기술검증(PoC) 수행 및 데이터 확보	실증 데이터 기반 후속 협력 논의	27.1.00.~27.2.00.	L/O 검토, 공동연구 확대 및 후속 파트너링
추진 내용	추진 기간	세부내용											
수요 제약사와 산출물 단계 협의	26.7.00.~26.8.00.	평가 프로토콜 및 데이터 공유 기준 확립											
In-vitro 효력시험 및 PK/PD 분석 등	26.8.00.~26.12.00.	기술검증(PoC) 수행 및 데이터 확보											
실증 데이터 기반 후속 협력 논의	27.1.00.~27.2.00.	L/O 검토, 공동연구 확대 및 후속 파트너링											

<p>핵심 인력 전문성 및 주요 성과</p>	<p>※ (표는 삭제 후 제출) 대표자 및 R&amp;D 책임자의 주요 핵심 역량(특정 대학 연구실 스폰서, 대형 제약사 연구원 출신 등), 주요 벤처캐피탈(VC) 투자유치, TIPS 등 주요 정부과제 선정, 글로벌 학회 발표 및 논문 게재 이력 등 기업의 기술력과 신뢰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성과 위주로 기재</p> <table border="1" data-bbox="1408 333 2107 679"> <thead> <tr> <th>구분</th> <th>관련 기관 (출신기관/투자사/발행처 등)</th> <th>세부 실적 (직책 및 기간/투자규모 등)</th> </tr> </thead> <tbody> <tr> <td>핵심인력</td> <td></td> <td></td> </tr> <tr> <td>기술검증(PoC) 및 협업 실적</td> <td></td> <td></td> </tr> <tr> <td>투자 유치 (Series A)</td> <td></td> <td></td> </tr> <tr> <td>주요과제 및 수상</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관련 기관 (출신기관/투자사/발행처 등)	세부 실적 (직책 및 기간/투자규모 등)	핵심인력			기술검증(PoC) 및 협업 실적			투자 유치 (Series A)			주요과제 및 수상		
구분	관련 기관 (출신기관/투자사/발행처 등)	세부 실적 (직책 및 기간/투자규모 등)														
핵심인력																
기술검증(PoC) 및 협업 실적																
투자 유치 (Series A)																
주요과제 및 수상																
<p>정부지원사업비 집행 계획</p>	<p>※ (표는 삭제 후 제출) 사업비는 최대 1억원 이내로 작성          * 사업 운영 지침 및 사업비 관리기준 내 비목별 집행 유의사항 등에 근거하여 기재          ※ 사업비 집행계획(표)에 작성한 예산은 선정평가 결과 및 수요 제약사와의 기술검증(PoC) 및 공동연구에 대한 금액의 적정성 여부 검토 등을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전체 사업화 자금 중 2,000만원은 주관기관이 제공하는 전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바이오 사업화 메뉴판) 활용을 고려하여 편성할 수 있음</p> <p>&lt; 정부지원사업비 집행계획 세부내역 &gt;</p> <table border="1" data-bbox="1413 1102 2114 1410"> <thead> <tr> <th>비 목</th> <th>산출근거</th> <th>금액(원)</th> </tr> </thead> <tbody> <tr> <td>지급수수료</td> <td>- 바이오 사업화 메뉴판 활용</td> <td>20,000,000</td> </tr> <tr> <td>재료비</td> <td>- 시약 및 연구 소모품 구입 (0개월 X 0000원)</td> <td>10,000,000</td> </tr> <tr> <td>외주용역비</td> <td>- 외부 비임상 CRO 독성/효력 시험 의뢰</td> <td>70,000,000</td> </tr> <tr> <td colspan="2">합 계</td> <td></td> </tr> </tbody> </table>	비 목	산출근거	금액(원)	지급수수료	- 바이오 사업화 메뉴판 활용	20,000,000	재료비	- 시약 및 연구 소모품 구입 (0개월 X 0000원)	10,000,000	외주용역비	- 외부 비임상 CRO 독성/효력 시험 의뢰	70,000,000	합 계		
비 목	산출근거	금액(원)														
지급수수료	- 바이오 사업화 메뉴판 활용	20,000,000														
재료비	- 시약 및 연구 소모품 구입 (0개월 X 0000원)	10,000,000														
외주용역비	- 외부 비임상 CRO 독성/효력 시험 의뢰	70,000,000														
합 계																

<b>붙임</b>	<b>기업 현황[요약]</b>
-----------	------------------

※ (표는 삭제 후 제출) 11포인트로 작성 권장(증빙서류 등은 제한 없음), '파란색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검정색 글씨로 작성하여 제출, 양식은 변경 또는 삭제 불가  
(행추가는 가능,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공란으로 유지)

기업명		대표자	
수요기업명		수요기술명	
창업일		연락처	
사업장 주소			
주요 기술/제품	(핵심 파이프라인 또는 플랫폼 기술 명칭)		
보유 기술 및 핵심 특징	(핵심 작용기전(MoA), 기존 치료제 대비 차별성 및 특장점 2~3줄 요약)		
개발 단계	(비임상, 임상 1상 등 현재 진행 단계 기재)		
누적 투자유치	총 00억 원 (Seed, Series A 등 단계 기재)		
대표자 약력	(주요 학력, 대학/연구소/제약사 주요 경력 등)		
성과	(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성과를 자유로이 기재) ▪ ▪ ▪		

<b>[해당 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b>
------------------------------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 증빙(스캔하여 첨부)  
  
 개인사업자 제외 / 법인사업자 필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전체 페이지) 제출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에 한함

**참고**

**사업비 집행 비목**

※ 본 페이지는 삭제 후 제출, 비목별 한도 없음

※ 창업기업 사업비 집행 비목은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집행계획 작성 시 참고, 세부 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선정 시 재 안내 예정

**<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사업비 집행 비목 >**

비목	비목 정의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을 구매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 창업기업이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을 고도화하거나 사업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공정을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 SW 등)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 관련 비용
인건비	• 창업기업 소속 직원이 시제품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지급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 임차비, 해외 액셀러레이터 보육 참가비, 규제애로 해소 법률컨설팅비 등)
여비	• 창업기업등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붙임 2**

**창업 여부 기준표**

신청기업 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이종	창업아님 ☆ <b>창 업</b>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 * 20.10.7. 이전 창업은 경과한지 적용 여부 확인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b>창 업</b>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b>창 업</b>
			폐업 3년 까지 부도/파산 - 2년 초과 부도/파산 - 2년 까지 성실경영실패자	창업아님 <b>창 업</b> 창업아님 <b>창 업</b>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b>창 업</b>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b>창 업</b>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폐업 3년 까지 부도/파산 - 2년 초과 부도/파산 - 2년 까지 성실경영실패자	<b>창 업</b> 창업아님 <b>창 업</b> 창업아님 <b>창 업</b>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b>창 업</b>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업아님 ☆ * 20.10.7. 이전 창업은 경과한지 적용 여부 확인 <b>창 업</b>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한지 적용 여부 확인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한지 적용 여부 확인	

※ 위 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반드시 규정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제2항에 따라 창업 제외 요건을 해소한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 : 상속/증여 받은 기업이 창업기업인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간 창업기업으로 인정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국가데이터처 통계분류포털 : kssc.kostat.go.kr

-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 **성실경영실패자** : 중소기업창업진흥공단의 재도전종합지원센터에서 성실경영심층평가(동종업종)를 통과한 자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1항 3호에 근거하여 성실경영실패자로 인정받은 것에 한함 \* 재도전종합지원센터 : rechallenge.or.kr
- ※ 기존 개인사업자의 폐업사실은 **폐업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등을 통해 확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6.1.1. 시행)**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나.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성실경영실패자가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판정한 결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 또는 신기술의 적용 등으로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개시하는 경우  
 4. 법인인 기업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인 기업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해당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로서 기존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기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 기존 사업을 폐업한 날  
 2. 제1항제4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존 법인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합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1) 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소속 임원이 임원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2) 기존 법인 또는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는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3. 제1항제5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나.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다.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③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제1항제1호, 제2호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⑤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기업창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단, 본 공고에 따라 창업기업의 신청자격 기준은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한하여 참여 가능

### 붙임 3

###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구분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희주점업	56211
2	무도유희주점업	56212
3	카지노 운영업	91242
4	기타 사행 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5	그 외 경제질서,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 중소기업창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붙임 4**

**2026년 동시수행 불가한 개방형 혁신 사업 목록**

연번	개방형 혁신 사업명
1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전략과제 해결형
2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민간선별 추천형
3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
4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상호 자율탐색형
5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공공데이터 챌린지(공고 예정)
6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규제자유특구 특화(공고 예정)
7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글로벌 창업허브 특화(공고 예정)
8	AI+ OpenData 챌린지
9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10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Around X)
11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모두의 챌린지 AX - LLM 분야
12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모두의 챌린지 AX - 버티컬 분야
13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모두의 챌린지 플랫폼
14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팸리스 챌린지
15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모두의 챌린지 로봇
16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뷰티 챌린지
17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링크업 4대 도메인 AX 프로그램
18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이노웨이브
19	모두의 챌린지 바이오(공고 예정)
20	모두의 챌린지 기후테크(공고 예정)

\* 예정 공고의 경우 명칭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 시 세부 내용 참조

**붙임 5**

**신산업 창업 분야**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신산업 창업 분야 창업기업의 경우, 업력 10년까지의 기업도 신청 가능

< 신산업 창업 분야 창업기업 >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2호) [별표 1]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  
 → 신산업 창업 분야 여부는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과정 등에서 검토하며, 해당 분야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취소 또는 협약 해지 될 수 있음

< 27개 신산업 창업 분야 >

인공지능	스마트 제조	드론·개인이동수단
빅데이터	시스템반도체	미래형 선박
5G+	자율주행차	재난/안전
블록체인	전기 수소차	스마트시티
서비스플랫폼	바이오	스마트홈
실감형 콘텐츠	의료기기	신재생에너지
지능형 로봇	기능성 식품	이차전지
CCUS (탄소 포집·활용·저장)	우주	양자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차세대 원전	사이버 보안

**붙임 6**

**바이오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사업화 메뉴판)**

No	항목	주요 내용
1	특허분석 및 IP 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유 기술의 국내외 특허 침해 리스크(FTO) 분석 및 회피 설계 전략 수립</li> <li>• 선행기술 조사를 통한 R&amp;D 방향성 재설정 및 강한 특허 확보</li> </ul>
2	R&D 전략 Master Pl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esearch) 타겟 제품 품목 분류 및 신약 개발 초기 로드맵 수립</li> <li>• (Development) Gap분석 기반 IND(임상시험계획) 진입을 위한 비임상CMC 전략 수립</li> <li>• (TPP) 목표 제품 특성(Target Product Profile) 기반 임상 전략 구체화</li> </ul>
3	BM (사업성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약 후보물질의 국내외 시장 규모 및 경쟁 약물 현황 분석</li> <li>• 글로벌 바이오 기업 Valuation 전문가를 통한 기업 가치평가 및 라이선싱 전략 수립</li> </ul>
4	보험급여 및 약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상 약가 시뮬레이션 및 보험 급여 등재 가능성 사전 검토</li> </ul>
5	MOA 및 효력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ND 승인을 위한 신물질 작용기전(MOA) 규명 전략 수립</li> <li>• In-vitro/In-vivo 효력 데이터 확보 및 독성 리스크 예측 컨설팅</li> </ul>
6	당·단백질 특성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백질/당/당단백질 정성·정량 분석 및 전처리 지원</li> <li>• 인포매틱스(Informatics) 기반 특성 분석 데이터 제공</li> </ul>
7	CMC 사전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ND~NDA 단계별 CMC 요구 수준 분석 및 전략 수립</li> <li>• 제형별(화학·바이오·세포치료제 등) CMC 초기 셋업 가이드</li> </ul>
8	비임상 사전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인허가 기준을 고려한 비임상 전략 수립</li> <li>• First-in-Class 신약 개발을 위한 비임상-임상 연계 전략</li> <li>• MRSD(Max. Recommended Starting Dose) 설정 컨설팅</li> </ul>
9	인허가 사전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FDA/FDA 인허가 절차 및 요구자료 사전 분석</li> <li>• R&amp;D 데이터·행정 문서 준비 전략 수립</li> </ul>
10	License-Out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 연관 제약사·바이오기업 타겟 조사</li> <li>• 공동연구·기술이전 미팅 주선 및 전략 컨설팅</li> </ul>
11	Global Partner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빅파마·CRO·BD 네트워크 연계 지원</li> <li>• China Bio, Bio Europe 등 글로벌 파트너링 포럼 참가 지원</li> </ul>
12	BD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icensing-Out Deal 사전 진단 및 구조 설계</li> <li>• 협상 전략 및 기업 가치 극대화 컨설팅</li> </ul>
13	GMP 시설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증된 GMP 파트너 기반 시설 사전 설계 컨설팅</li> <li>• 시설 구축 시 비용·시간 리스크 최소화</li> </ul>
14	파워멘토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약 개발 단계별 최고 전문가 맞춤형 멘토링</li> <li>• 스타트업 핵심 이슈 해결 중심 실전 자문</li> </ul>